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영 주 시

영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 안	
번 호	201

제출년월일 : 2001. 6 . . .

제출자 : 영주시장

1. 제정이유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나.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하고, 동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내지 제10조)
- 마. 기금의 융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바.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 등 회계공무원을 정함(안 제13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참고자료 : 덧붙임

- 가. 식품진흥기금업무처리요령시달(2000.8.5 경북도 보건65412-2735) 사본1부.
- 나. 관련법령(발췌) 1부.
- 다. 입법예고결과 1부.

영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영주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영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음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기금의 관리,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7. 기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 ②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식품위생업무담당공무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 또는 전문성을 가진 자
 3.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 ④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시기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생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융자사업) ①시장은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이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1. 기금출납명령관 : 행정지원국장

2. 기금출납공무원 : 위생업무담당주사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0-
"어우르자 세계문화 꽃피우자 한국문화"

관인생략



경상북도

우702-702 대구.북.산격.1443-5 / 전화(053)950 - 2438 / 전송 950 - 2429
보건위생과 과장 김태웅 사무관 이순옥 담당자 이춘세

문서번호 보건 65412 -2735

시행일자 2000. 8. 5.(3년)

공개여부 공개

수신 시장군수

참조 식품위생담당과.소장

선 람	시장	지	
접 수	일자 시간	결 재	기획자금정책 예산집행 경우금액 회계비정정 전수집행 제작수수 진행
	2000. 8. 7]	국 장	4. 8. 7 -121
	번호	공 과 장	2000. 8. 7 9. 14. 7
	처리 과	감 독	기획자금정책 예산집행 경우금액 회계비정정 전수집행 제작수수 진행
	담당자	감 독	2000. 8. 7 9. 14. 7
	심사자	심사 일	7

제목 식품진흥기금 업무처리 요령시달

3자기 10개월

1. 보건65400-2634(2000.7.26)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진흥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업무처리 요령을 별첨과 같이 수립 시달하니 제반사항 추진에 착오없기 바라며 특히 개정된 식품위생법령 및 보건복지부훈령을 숙지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첨부 : 시·군식품진흥기금업무처리요령 1부 끝.

경상북도지사

전결 보건위생과장 김태웅

시·군 식품진흥기금 업무처리 요령

2000.7.27부로 식품위생법시행령 공포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도 및 시군 귀속비율이 제정되어 시군에 기금설치가 확정되었으므로 동업무처리 요령을 수립 시달.

□ 시·군 기금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65조 제4항 개정(2000.7.13 시행)
 - 시·도에 설치 운영중인 식품진흥기금을 시군에서도 설치운영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9조의2 제정(2000.7.27 시행)
 - 과징금 귀속비율 제정 : 도(40%), 시군(60%)

□ 시·군별 조치사항

- 기금설치 : 시군 위생업무담당부서
- 회계관직 지정 및 공인 제작관리
동 내용은 보건복지부훈령 제78호를 참조한것이나 동 훈령이 식품위생법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은 시군 예산담당부서등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 검토후 결정하기 바람.
 - 기금출납명령관 : 식품위생업무 담당국장(국장 직제가 없는 시군은 부시장,부군수)
 - 기금출납공무원 : 식품위생업무 담당사무관

※ 단, 보건소의 경우

- 기금출납명령관 : 보건소장
- 기금출납공무원 : 담당주사
- 공인제작 관리
 - 시군 공인조례에 의하여 제작관리
(예 : ○○시군 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
○○시군 식품진흥기금출납공무원)
- 기금계정 설치 : 기금취급 금융기관 지정 및 수입과 지출 계정설치(2000.7.13이후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비율대로 입금조치)
- 식품진흥기금 지출원인행위
 -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는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 운영에 적절을 기하고 현금을 교부하는 대신 지정금융기관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 발행
- 기금 수입 및 지출에 따른 서식 및 장부 비치
 - 보건복지부훈령 제78호 참조

□ 행정사항

- 시군 식품진흥기금 계정 설치이후 과징금은 시군기금계정으로 전액 수납토록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시군 귀속액을 산정, 익월5일까지 도 식품진흥기금 계정으로 입금조치(동 업무는 시군 실정에 따라 적의 조정가능 하되 여타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납부 방법 및 사유서를 2000.8.16일까지 제출)

- 세입징수보고는 별첨 변경서식에 의거 2000.8.17까지 제출하고 불납결손이나 반환금이 있을때는 관련증빙 서류를 필히 첨부할것
- 응자 및 여타사업 추진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결정 통보할 것임
아울러 응자대상자 통보시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적합한지 충분한 검토를 하기 바라며 결정후 미응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응자대상자를 확대하기 바람.
- 식품위생법시행령제43조제7항의 조례제정은 현재 도조례 시안을 마련하고 있어 참고자료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라며 여타 필요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및 보건복지부 훈령 제78호를 숙지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 응자이율등 응자기준은 조례 제정시 재검토 할것이므로 다소 기간이 소요됨을 참고하기 바람.

□ 첨부서류

1. 세입징수보고서식
2. 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3. 식품진흥기금운용에따른사무처리규정(보건복지부훈령제78호)

세입장수보고서

四庫全書

판서명 :

문서번호
수신
차주

卷八

※금당자 : 죄
 (전화번호) 010-1234-5678

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제0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도민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02장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기금의 관리,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 (기금의 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설치·운용한다.

② 여유자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이자 수익률을 고려하여 예탁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보건환경산림국장을 기금 출납 명령관으로, 위생관리담당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④ 기금의 출납은 경상북도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보건환경산림국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 ④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3장 시설개선자금 융자

제9조 (융자계획의 공고) 도지사는 제4조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경상북도 관내에서 법시행령제7조의 영업을 하는자중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11조 (융자신청)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때는 융자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융자금 대여) ① 도지사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04장 보 칙

제14조 (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관 련 법령(발췌)

【식품위생법】

제65조(과징금 처분)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5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59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5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제5조·제7조·제10조·제22조·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58조제1항 또는 제5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의 식품진흥기금(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귀속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 및 시·군·구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 이 경우 시·도 및 시·군·구에의 귀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시·도지사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71조(식품진흥기금) ①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삭제
 5.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영업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 감미료·착색료·보존료·표백제 등의 식품첨가물, 동·식물로부터 추출한 단일성분의 천연첨가물과 국·종국 또는 첨가물의 혼합제제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당해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

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당해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식품소분·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1) 내지 (3) [삭제]

(4) 식용열음판매업 : 식용열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5)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달류·음료 또는 익혀서 가공처리한 면류 등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캔음료등 포장이 완료된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7) 삭제

(8) 식품등수입판매업 :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기타 식품판매업 : (4) 내지 (8)외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슈퍼마켓·연쇄점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 방사선을 써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

나. 식품냉동·냉장업 : 식품을 열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을 제외한다.

7. 용기·포장류제조업

가. 용기·포장지제조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용기류를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나. 옹기류제조업 :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향아리·뚝배기등을 제조하는 영업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형태의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홍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홍종사자를 두거나 유홍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39조의2(식품진흥기금의 귀속비율) 법제6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시·도 및 시·군·구 귀속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도 : 100분의 40

2. 시·군·구 : 100분의 60

제42조(식품진흥기금사업) ①법 제71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행할 수 있는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2.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2의2.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의 위탁검사를 위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실 설치 지원

2의3.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 2의4.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3.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지도원의 활동지원
4. 시·도지사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게 연구를 위탁한 사업
5. 음식문화의 개선과 식품의 재활용을 하기 위한 사업
6. 식품위생 및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전산화 사업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하는 사업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거나 당해 사업의 추진현황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기금의 운용)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 ③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④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 행위와 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 ⑤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⑥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출납명령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 행위를 하게 하는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 ⑦기타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입 법 예 고 결 과

- 조례명 : 영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예고방법 : 영주시청 홈페이지 및 영주시보 제294호(2001
년 5월 28일)에 게재
- 예고기간 : 2001년 5월 28일 ~ 2001년 6월 18일
- 의견제출여부 : 없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의 안

- 의안번호 : 제201호
- 의 안 명 : 영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해당부서 : 행정지원국 사회복지과

2. 제안이유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나.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기금은 시급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하고, 동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내지 제10조)
- 마. 기금의 융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바.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 등 회계공무원을 정함(안 제13조)

4. 검토의견

- 영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1조 : 조례의 제정목적, 안 제2조 :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 안 제3조 : 기금의 조성, 안 제4조 : 기금의 용도
 - 안 제5조 : 기금의 운용·관리, 안 제6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안 제7조 : 위원장의 직무, 안 제8조 : 회의
 - 안 제9조 : 위원회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및 서기 임명

- 안 제10조 : 위원에 대한 수당 등 지급
- 안 제11조 : 기금의 융자사업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12조 :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 안 제13조 : 회계공무원 지정
- 안 제14조 : 관계규정의 준용 등을 규정하고
- 안 제15조 :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임.

○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 본 제정조례의 법적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시 행령 제43조 제7항에 근거하며,
- 2000. 8. 5 경북도지사로부터 식품진흥기금 업무처리 지침이 시달 되었으며,
-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01. 7.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